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회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제6조 (기획조정실) 신설 요청	[의견] 제6조에 다음 호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증진 정책의 기획·조정과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학생 건강검사 제도 운영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유] 1. 학교보건·보건교육·건강증진 사무는 정책 기획과 현장 집행의 균형이 있어야 정책 실효성이 있음. 조례안에는 집행 사무만 있고 이를 종합 기획·평가하는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최전선이며, 학생 건강 보호가 학습 권 보장과 직결됨을 확인하였음. 신종 감염병 팬데믹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 평시 예방·대응 체계를 기획 단계에서 총괄하고 평가할 조직 기반이 필요함. 3. 올해는 학생 건강검사 개편의 원년임. 개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행 성과 분석, 결과 환류, 예산·인력 연계가 필요하며, 이는 정책기획·예산·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맡아야 실효성이 확보됨. 4. 「학교보건법」,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부서별로 분산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조정 기능이 필요함.	수정 (신설)
제7조 (남부교육국) 제10조 (북부교육국) 신설 요청	[의견] 제7조 및 제10조에 다음 호를 각각 신설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 보건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생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유] 1. 보건교육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정으로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 학습 사무와 직접 연결됨. 조례안 제7조·제10조에는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어, 교육과정 운영 부서와 보건교육 간 연계 고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2. 현행에서는 지역교육국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지원을 함께 맡고 있으나, 개편안은 이를 교육국 분장에서 제외하고 있음. 교육과정 운영과 분리되	수정 (신설)

면 보건교육이 행정 지원 업무로 축소될 우려가 있음.

3. 보건교육과정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건강권 및 건강 자원의 활용, 건강 문화 등을 포괄하고 있음.

4. 보건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정규 교육활동으로서, 가정환경과 지역에 따라 벌어지는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는 가장 실효적인 공교육의 수단임. 건강 문제는 결석, 집중력 저하,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의 건강 기반을 튼튼히 하는 보건교육은 학습 격차를 줄이는 기초가 됨. 아울러 보건교육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임. 따라서 보건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교육국에서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함

5. .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22 개정 보건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임. 이 의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교원 연수를 관장하는 교육국에 보건교육과정 운영 사무가 명확히 분장되어야 함. 교육국 분장에 이 사무가 없으면 학교급별 보건교육과정의 운영 지원·점검·환류 주체가 불분명해져 법정 보건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아울러 보건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 수업, 건강증진학교 운영, 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교육적 사후관리도 교육과정 운영 부서와의 협력이 있어야 효과가 높음.

6. 학생 건강검사 개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보건교육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해지므로, 교육국 분장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